

「技術士業務를 위한 國內法規 및 西歐先進國의 標準約款에 關하여」

「Local regulation & its law and standard contracts list of western Europes for the business promotions by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s」

漢陽大産業大學院 講師 金 峴 根*

1. 머리 말

技術士資格試驗에는 專攻分野에 該當하는 專門知識에 關한 試驗單 課하는 것이 現行資格者 試驗이기에 우리는 業務受注에서 어떠한 엔지니어링에 關한 成果書納品은 專攻技術의 一種의 세일스엔지니어링(Sales Engineering)에 屬하는 것이나 이 過程에 있어서 契約締結時 技術士業務遂行上 알아야 할 常識的인 國內法規(直接關聯되는 것만이라도)은 勿論, 海外進出을 위해서는 國際去來上 쓰이는 慣例的인 標準的 約款等を 알아야 함에도 不拘하고 無視·輕視·等閑視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여기에 參考삼아, 技術 및 技能資格關係法規篇과 業務關係其他法規篇으로 要約해서 적기로 하였다. 더우기, 工事監理가 普編化되기 始作하고 政府의 發注工事が 工事監理를 制度化해서 活潑하게 進行하고 있어서 이것도 現行法上 專門技術士와 施工技術士間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要約整理한 것이다.

2. 技術士業務遂行上關聯된 主要한 國內法規

技術 및 技能資格關係法規가 13가지가 있고,

業務遂行關係法規其他가 19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都合 32가지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리스트화한 것이 표1-과 같다. 또 現在政府가 立案上程中에 있는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과 工業發展法案等과 既存法과의 흐름圖를 建設 및 플랜트輸出의 增大와 持續促進한다는 立場에서 도-1과 같은 것을 作成하였다.

표-1 技術士業務遂行上 關聯된 主要한 國內法規리스트

技術資格關係法規

- (1) 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1973. 12. 31 制定公布法 第2672.)
※ 1983. 12. 20 二次改正
- (2)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1973. 12. 16 制定公布法 第1536號) 三次改正
※ 第4條(設計 또는 工事監理 등)
同施行令(1982. 7. 14. 四次改正) 第2條(工事監理)
- (3) 測量法 및 同施行令(1961. 12. 31 制定公布法 第938號)
※ 第32條(測量技術者의 免許)
同施行令(1983. 5. 30. 四次改正)
- (4) 電氣工事業法 및 同施行令(1976. 12. 31. 法 第2967號)
※ 第18條(電氣工事業의 施工管理)

*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洋)

- 同施行令(1983. 10. 8. 改正)
- ※ 第17條(施工管理의 技術的(制限))
- (5) 에너지利用合理化法(1979. 12. 28. 制定公布法 第3181號) 1982. 11. 29. 改正
- ※ 第72條(教育)
- 附則 第3條(經過措置): 에너지管理士 原動機關係各種技能士, 同施行令(1981. 11. 6. 改正)
- (6) 消防法(1975年 12月 31日 制定公布法 第2802號), 四次改正함. 全文 79條 및 附則.
- ※ 第18條[危險物·取扱主任] 第42條의 11[消防設備工事의 施工管理]
- (7) 都市가스事業法(1983. 12. 31. 法 第3705號) 全文 57條 附則
- ※ 第12條(가스施設의 施工·管理)
- (8) 鑛山保安法(1963. 3. 5. 法 第1292號, 四次改正함) 全文 29條 附則
- ※ 第13條 保安管理職員
- (9) 産業安全保健法(1981年 12月 31日 制定公布法 第3532號) 第13條(安全管理者)……②「安全管理者의 資格, 職務權限과 安全擔當者를 指定하여야 할 作業의 種類 및 安全擔當者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同施行令
- (10) 高壓가스 安全管理法(1983. 12. 31. 法 第3703號) 全文 46條 附則
- ※ 第15條(安全管理者)
- (11) 電氣通信工事業法(1976. 4. 6. 法 第2893號) 二次改正함. 全文 38條와 附則
- ※ 第2條의 5項) 通信技術資格者, 第24條(通信技術資格者의 現場配置)
- (12) 重機管理法 및 同施行令(1976. 7. 26. 法 第2785號) 全文 36條 및 附則.
- (13) 韓國技術檢定公團法(1976. 11. 5. 制定公布法 第2897號)
- ※ 1981年 2月 31日 制定公布된 法律 第3506號에 依據하여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法에 吸收消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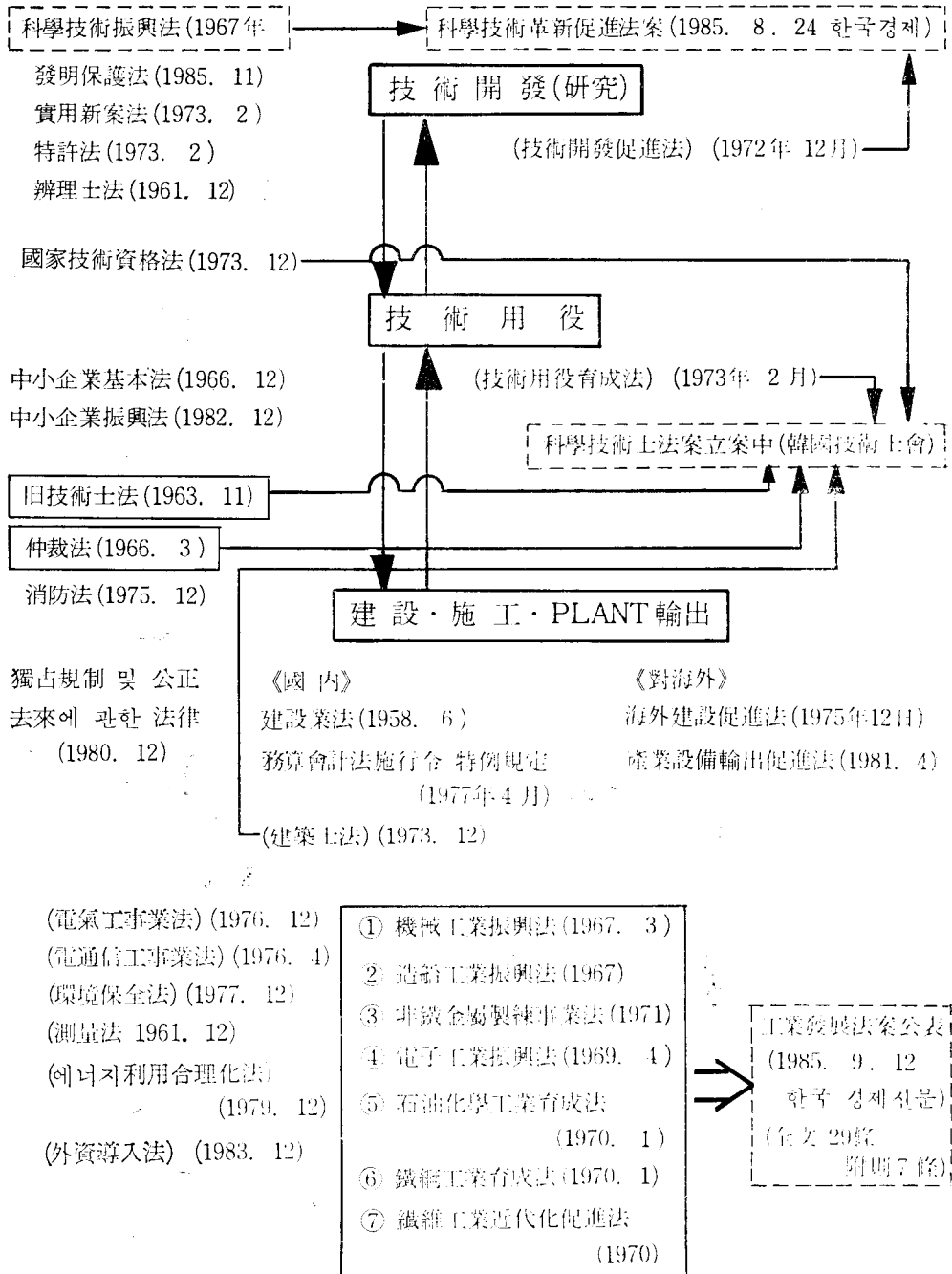
業務 遂行關係法規

- (14) 建設業法(1958. 3. 11. 制定公布法 第2290號) 全文 55條와 附則
- ※ 第17條(建設技術者의 免許) 第19條(建設技

術者의 兼職禁止)

- 同施行令(1958. 6. 5. 制定公布 大令 第10866號11次 改正 1981. 12. 31.)
- ※ 第30條(建設技術者의 種類와 等級), (大令 第10987號 9次 改正 1982. 12. 31.)
- (15) 海外建設促進法(1975. 12. 31. 制定公布法 第3316號) 全文40條와 附則.
- 同施行令 五次改正함. 全文 36條와 附則
- ※ 第4條의 2[海外建設業의 免許 등] ③의 2. 別表 1의 綜合建設業의 免許……
- (16)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制定公布法 第2474號)
- 同施行令(1973. 9. 7. 大令 第6845號 6次 改正 1982. 8. 18.)
- ※ 第3條(用役業의 種類)
- 附則 第2條(認定技術士의 資格認定)
- (17) 建設工事施工監理規定(1984. 2. 29. 大令 第11374號)
- ※ 第4條(監理者의 選定 등) 第1項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用役業者로 登錄한 者
- 第2項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
- (18) 大型工事契約에 關한 豫算會計法施行令 特例規定(1977. 4. 1. 大令 第8525號)
- ※ 設計施工一括代案入札施行에 關한 것임.
- (19) 技術開發促進法(1977. 12. 31. 法 第3095號 改正)
- 同施行令(1975. 10. 30. 大令 第7855號 改正)
- (20) 産業設備輸出促進法(1981. 4. 8. 法 第3422號 改正)
- 同施行令(1979. 2. 9. 大令 第9316號)
- (21) 鐵鋼工業育成法(1970. 1. 1. 法 第2181號 一次改正함. 全文 20條 附則)
- (22) 機械工業振興法(1967. 3. 30. 法 第933號) 三次改正함. 全文 21條 附則
- (23) 電子工業振興法(1981. 4. 13. 法 第3436號): 全文 2條 附則
- (24)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1979. 12. 28. 法 第3180號): 全文 30條 附則
- (25) 造船工業振興法(1967. 3. 30. 法 第1937號) 全文 18條 및 附則
- (26) 石油化學工業育成法(1970. 1. 1. 法 第2182

도-1 : 技術士業務遂行上 關聯된 法の 關聯圖



도-1 : 技術士業務遂行上 關聯된 法の 關聯圖

- 號) 一次改正함. 全文 19條 附則
- (27) 非鐵金屬製鍊事業法(1971. 1. 22. 法 第2304號) 全文 19條 및 附則
- (28) 中小企業振興法(1982. 12. 31. 法 第3651號)
- (29) 環境保全法(1977. 12. 31. 法 第3078號) 三次改正함. 全文 70條 附則
- 同法 第 7 章 防止施設業, 同施行令 第 4 條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同施行令 第29條 環境汚染防止事業의 種類 等 있다.

其他法

- (30) 科學技術振興法(1967. 1. 16. 法 第1864號, 1967年과 1972年の 二次 改正)
- (31) 仲裁法(1966. 3. 16. 法 第1767號, 1973年 一次 改正) 全文 18條 附則
- (32) 舊技術士法(1963. 11. 11. 法 第 1442 號, 二次 改正後 國家技術資格法(1973. 12. 31. 制定 公布로 消滅됨. 全文 38條 附則으로 되어 있었다.

3. 技術用役育成法을 活用한 諸法規

3.1. 産業設備輸出促進法

이 法 第 2 條의 2 項 : 「産業設備輸出」이라 함은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國內生産機資材比率에 適合한 一定規模以上の 産業設備의 輸出과 産業設備과 함께 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하는 輸出(이하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條項과 同法 第 4 條 ③項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用役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者로 본다」고 되어 있다.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이 1982 年 8 月 18 日에 6 次 改正時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用役業이 産業設備用役業으로 名稱이 바뀌었고, 이 法에 依하면 用役業者가 海外受注工事時 産業設備의 輸出과 함께 施工도 할 수 있게 한 것이 한 特徵이 되기도 하고 現行海外建設促進法과는 相馳되는 點이 있기는 하다. 이 産業設備輸出促進法中 目的, 定義, 登錄에 關한 條項만 다음과 같이 拔萃記載한다.

産業設備輸出促進法

[1978. 12. 5]
法律 第3123號]

改正1981. 4. 8 法律 第3422號(政府組織法)

第 1 條 (目的) 이 法은 産業設備輸出을 促進하여 輸出構造를 高度化함으로써 國際收支向上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設備”라 함은 鑛業, 製造業, 電氣·가스業, 放送·通信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機械 및 裝置와 大統領令이 定하는 設備를 말한다.
2. “産業設備輸出”이라 함은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國內生産機資材比率에 적합한 一定規模 이상의 産業設備의 輸出과 業設備과 함께 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하는 輸出(이하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이라 한다)을 말한다.
3. “受注”라 함은 海外의 産業設備輸入者와 직접 輸出契約을 締結하는 것을 말한다.

第 3 條 (다른 法과의 關係) 産業設備輸出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貿易 去來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條 (登錄) ①産業設備輸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부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의 資格, 登錄基準, 登錄節次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用役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로 본다.

※ 이 法은 全文 18條 附則으로 되어 있고, 同施行令은 制定以後二次나 改正한 바 있으며, 全文 19條附則으로 되어 있다.

3.2. 海外建設促進法

이 法의 第 4 條(海外建設業의 免許) 3項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技術用役業의 登錄을 한 者 및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로 되어 있다.

이 法의 目的, 用語의 定義, 他法과의 關係等

技術士가 꼭 알아야 할 條項만 다음과 같이 拔萃記載한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이 法의 “海外建設用役”이라는 定義와 技術用役育成法 第2條의 “技術用役”의 定義와 對比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海外建設促進法(法 第2855, 1975. 12. 31. 公布)
改正 1976. 12. 31. 法律 第2970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外建設을 促進하여 海外建設을 振興하고 海建外設工事的 適正한 施工을 期하게 함으로써 國際收支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發注되는 土木, 建築, 電氣, 電氣通信 其他 工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海外建設用役”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的 調査, 計劃, 設計, 監理, 詰問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3.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都給, 下都給 其他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用役(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都給받는 營業을 말한다.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 第4條의 2[海外建設業의 免許 등] 「③建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할 수 있다.

1. 은 省略한다.
2. 別表-1의 綜合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一般建設業·特殊工事業·電氣工事業 또는 電氣通信工事業의 免許中 1以上の 免許로 業種變更을 申請하는 경우」(1981. 5. 30. 本項改正)

別表-1 海外建設業의 營業의 種類(1981. 5. 30. 改正)

營業의 種類	營業의 內容
綜合建設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土木工事, 鋪裝工事, 港灣浚渫工事 2. 建築工事 3. 産業設備中電氣設備과 電氣通信設備을 除外한 設備의 設置工事, 鐵鋼構造物工事 其他 鋼製設備施設工事 4. 電氣工事 5. 電氣通信工事 6. 1내지 5의 工事に 대한 維持補修工事(이에 따른 運營·管理를 包含한다)
一般建設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土木工事·鋪裝工事·港灣浚渫工事 2. 建築工事 3. 1 및 2의 工事に 對한 維持補修工事(이에 따른 運營管理를 包含한다)
(以下省略함)	

여기서 指摘되는 것은 建設業法에 없는 綜合建設業의 免許가 海外建設促進法에는 있고, 이것이 西歐와 같은 GENECON(general contractor)概念이라면은 技術用役業도 包含시켜서 實地化, 合理化를 期해야 할 것이다. H建設會社의 商號는 現在英文表記로는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로 한 바와 같이 該當法의 現實合理化, 先進化로 補完改正되어야 한다.

3.3. 建設工事監理規程
(1984. 2. 29. 大令 第11374號)

主要한 骨子は 다음과 같다.

3.3.1. 定義

(1) 建設工事라 함은 建設業法 第2條 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を 말함.

(2) 監理라 함은 建設工事を 發注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의 契約(이하

“監理契約”이라 함)에 의하여 監理者가 당해 工事의 施工過程에서 그의 專門的인 知識·技術·經驗 등을 활용하여 發注者의 監督下에 당해 工事が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정한 內容대로 施工되었는가 施工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技術指導 등을 하는 것을 말함.

(3) 監理者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되어 發注者와 監理契約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者를 말함.

3.3.2. 監理對象工事등을 정함(§3).

(1) 必須監理對象工事

發注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大型工事契約에 관한 豫算會計法 施行令特例規程 第2條 第1號 및 第1號의 2의 規定에 의한 大型工事 및 特定工事와 設計審査委員會規程에 의한 中央設計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이 監理의 필요성을 인정한 工事に 관하여 監理者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2) 監理對象工事의 專門分野

發注者는 工事의 專門分野別로 監理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토질 및 기초분야
- (나) 토목구조물 분야
- (다) 항만 및 해안 분야
- (라) 도로 및 공항분야
- (마) 철도분야
- (바) 수자원분야
- (사) 에너지토목분야
- (아) 상·하수도분야
- (자)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분야
- (차) 건축분야
- (카)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분야
- (타) 조경분야

3.3.3. 監理者의 選定등에 관하여 정함(§4).

發注者는 그가 發注한 工事に 관하여 監理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중 監理를 받고자 하는 工事의 專門分野에 관한 業務를 행하는 者로서 專門的인 知識·技術 및 經驗과 經營實態 등을 종합적으로 分析判斷하여 충분한 監理能力을 보유한 專門業體로 인정되는 監理者로 選定하도록 함. 다만 工事を 都給받은 者의 系列會社(獨占規制 및 公正去來

에 관한 法律 第7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함는 監理의 客觀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工事의 監理者로 選定할 수 없도록 함.

(1)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用役業者로 登錄한 者.

(2)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技術用役育成法 第2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工場建築物을 제외한 建築工事分野인 경우에 한함).

또한 發注者는 國內用役業者가 수행할 수 없는 監理業務에 대하여는 技術用役育成法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用役業者를 監理者로 選定할 수 있도록 함.

3.3.4. 責任技術者의 工事現場 常駐(§5)

監理者는 그가 監理하는 專門分野의 技術士·建築士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資格이 있다고 發注者가 인정하는 高級技術者(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나 理工系博士學位所持者 또는 4年 制理工系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 中學校의 졸업자로서 당해 專門分野에서 10年 이상 근무한 者를 말함)를 責任技術者로 하고, 責任技術者 밑에 필요한 數의 同專門分野의 技術者(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士 1級이나 방사선 취급감독자 또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를 말함. 다만 技術人力確保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科學技術處長官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4年制理工系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各 中學校의 졸업자도 이에 준한 技術者로 볼 수 있음)을 두어 各 工事現場에 常駐시키도록 함.

3.3.5. 監理契約에 포함되어야 할 事項을 정함(§6).

發注者는 監理者로 規定되는 者와 監理契約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그 監理契約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의 監理가 監理를 함에 있어 工事が 設計圖書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施工者에의 조속한 시정요구, 필요한 경우의 시공중지명령, 施工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그 뜻의 發注者에의 報告義務등이 明示되어야 함.

(1) 監理者의 業務內容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事項

- (가) 施工計劃의 검토
- (나) 工程表의 검토
- (다) 施工者가 작성한 施工圖面의 검토
- (라) 施工이 設計圖面 및 市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확인
- (마) 構造物 規格의 적합성의 검토
- (바) 使用資材의 적합성의 검토
- (사) 試驗成果에 관한 검토
- (아) 安全管理의 지도
- (자) 設計의 變更에 관한 事項의 검토
- (차) 공정 및 기성고의 사정
-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타) 下都給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파) 기타 工事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

(2) 監理實施에 관한 計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事項

- (가) 專門分野別 監理人員의 配置計劃
- (나) 監理에 소요되는 人員의 근무일정 계획
- (3) 監理者가 發注者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등에 관한 事項
- (4) 監理費 및 그 支給方法에 관한 事項
- (5) 監理者의 契約義務履行에 필요한 誠對監理·기밀유지 등의 事項
- (6) 監理者의 責任에 관한 事項

3.3.6. 不誠實監理者에 대한 措置(§7).

監理者가 그(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監理業務를 태만히 하거나 不適正하게 수행하는 등 不誠實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內容을 建設部長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建設部長官은 그 內容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中央行政機關등 關係機關에 통보하여 당해 機關에 의한 監理者의 選定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指摘되는 것은 “施工技術士”는 監理者資格에서 除外되어 있다는 것이며, 參考로 建設業法の 適用을 받는 施工技術士의 業務關係法條項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建設業法施行令 第30條〔建設技術者의 種類와 等級〕法 第17條 第5項의 規程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種類는 土木·建築·機械 및 國土開發로 하고 等級은 各種類別로 技術士, 技士 1級 및

別表-4 建設技術者의 種類別·等級別 免許種目

종 류	等級別免許種目		
	技術士	技士 1級	技士 2級
土 木	施 工	土 木	土 木
建 築	建築施工	建 築	建 築
機 械	建設機械	建設機械	建設機械
國土開發	地域 및 都市計劃 造景	地域 및 都市計劃 造景	地域 및 都市計劃 造景

技士 2級으로 하며, 各種類別·等級別·免許種目은 別表-4와 같다.

4. 技術用役育成法の 발자취

技術用役育成法の 制定公布되기 前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化工部門이 1955年度부터 엔지니어링이 民間業界에서 始作하였고, 또 內務部土木局時節에 上水道設計用役을 1957年 下半期부터 外注한 것이 技術用役의 嚆矢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漸次로 普遍化되자, 建設部로 昇格하면서 技術用役發注量이 增加함과 同時に 舊技術士法이 制定公布되면서 建設部自體가 技術用役의 事務處理上 必要에 의해서 行政內規로서 “技術用役業務評價規定”이 制定施行하다가 다음 표 4.1.과 같은 여러가지 行政內規의 制定施行過程을 걸치면서 1973年 2月 5日 制定公布된 技術用役育成法을 보게되어 技術士의 活用規制化가 內規에서 法制化된 것이다. 參考로 摘記하자면 “建設用役業者管理規定”의 第8條〔技術能力〕「① 第4條 第1項 乃至 第6號의 各部門의 責任技術者는 各該當部門의 技術士資格을 獲得하였거나 大學卒業後 各該當部門의 建設用役 또는 이에준하는 業務에 關하여 實務經歷이 10年以上인 者 또는 專門學校卒業後 各該當部門의 建設用役實務經歷이 12年以上인 者로한다」는 過去 의한 內規事例를 볼 수 있다. 이때에는 登錄部門으로서 道路, 港灣, 上下水道, 水資源, 都市 및 地方計劃, 地質, 建築設計 및 測量等 8個分野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其間의 技術用役育成法 및 同施行令의 變遷과 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 4.1. 技術用役育成法制定公布以前の 建設
部關係訓令リスト**

- ※ 舊技術士法(1963. 11. 11) 制定公布
- (1) 第33號(1964. 7. 25.) 技術用役業務評價
規定 制定施行
- (2) 第117號(1968. 12. 12.) 建設用役業者管
理規定 制定施行
- (3) 第189號(1971. 10. 6.) 技術審査委員會規
定 制定施行
- (4) 第91號(1971. 10. 11.) 建設用役業者登錄
規定 制定施行
- (5) 第208號(1972. 2. 11.) 中央設計審査委
員會運營細則 制定施行
-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制定公布

技術用役育成法の 變遷과 現況

- (1) 法制定
 - 1973. 2. 5. 法律 第2474號 技術用役育成法制定
公布
 - 1973. 9. 7. 大令 第6845號 同施行令制定公布
 - ☆ 特記事項
 - 1) 資本金 2百萬圓~5百萬圓 以上
 - 2) 建物面積 30m²~50m² 以上
 - 3) 土木部門은 一般土木과 水資源分野의 2
個部門으로 分類하여 該當技術士 4人以上
要確保토록함. (專門用役業이라 稱하여)
- (2) 第1次 改正
 - 1976. 12. 31. 法律 第2993號 改正
 - ☆ 第2條(定義)……科學技術을 應用하여 事
業 및 施設物의 計劃, 研究·設計·分析·
調査·購買·調達·試驗·監理·試運轉·評
價·諮問·指導·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特殊工場建築物”
 - ☆ 第4條(用役受注의 限(度))
- (3) 第2次 改正
 - 1977. 7. 16. 大令 第8632號 改正
 - ☆ 第3條(用役業의 種類)……플랜트·엔지니
어링用役業, 綜合建設技術用役業, 專門技術
用役業(1個以上の 專門分野의 用役業)……
 - ☆ 資本金 1000 萬圓~3億圓 以上(新規分類別

- 에 따라)
- ☆ 事務室面積 49m²~297m² 以上
- ☆ 플랜트·엔지니어링用役業은 化學工場, 一
般産業工場, 發電所·原子力産業 等으로 細
分되다.
- (4) 第3次 改正
 - 1978. 9. 18. 大令 제9161호 技術用役育成法施
行令改正
- (5) 第4次
 - 1979. 8. 27. 大令 第9564號 同 施行令改正에서
附則 第2條④……
 - ☆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1年 12月 31
日까지로 한다.
- (6) 第5次
 - 1981. 12. 31. 大令 第10657號 同 施行令改正에
서 附則 第2條④……
 - ☆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2年 11月 30
日까지로 한다.
- (7) 第6次의 改正
 - 1982. 8. 18. 大令 第10904號 同 施行令改正
 - ☆ 第3條(用役業의 種類) 産業設備用役業, 綜
合建設技術用役業, 專門技術用役業, 個人用
役業技術
 - ☆ 第16條(用役의 受注限度)
 - ☆ 資本金 5千萬圓~15億圓 以上
事務室面積 : 56m²~600m² 以上
(Ref Vol. 15. No. 3 SEP. 1982)
 - ☆ 附則 第2條 : 認定技術士의 資格認定 期限
1984. 12. 31. 까지
第3條 : 認定技術士一級의 認定期限 1982.
11. 30. 까지(1982. 1. 11. 字기관 : 622. 1-291
과 기관 : 622. 1-에 의거함)
 - ☆ 公告時期에 限해 登錄可能함.
 - ☆ 國內發注上의 外國用役業은 融通이 생긴다.
 - ☆ 用役協會의 業務·監督事項規定함.
 - ☆ 專門技術用役業은 該當技術士 2人 以上되
여야 한다.
- (8) 1984. 4. 7. 科學技術處公告 第84-14號에 의
한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中改正案
 - ☆ 登錄對象의 追加(機械外種目)
 - ☆ 認定技術士가 아닌 高級技術者의 活用
※ 많은 技術士의 公式反對로 因해 改正案

의 閣議上程이 挫折된 바 있음.

5. 技術士活性化에 直接關聯된 法規의 問題點

5.1. 技術士活性化의 法規目錄

- (1) 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
- (2) 技術用役育成法 및 同施行令
- (3) 大型工事に 關한 豫算會計法施行令 特例 規程
- (4) 建設業法 및 同施行令
- (5) 海外建設促進法 및 同施行令
- (6) 産業設備輸出促進法 및 同施行令
- (7) 技術開發促進法 및 同施行令
- (8) 建設工事監理規程
- (9)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
- (10) 仲裁法

以上과 같이 技術士의 活性化促進을 위해 直接關聯된 法規의 目錄에서 보다깊히 其間, 筆者가 所謂 “科學技術士法案”을 立案하면서 느끼고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事項中 많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要約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5.2. 施工技術士活性化에 關한 問題點

(1) 適用法인 建設業法施行令 第26條[現場技術管理人 등] 「② 建設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를 建設工事의 現場에 配置함에 있어 都給金額이 30億원을 超過하는 工事に 있어서는 技術士를, 5億원을 超過하는 工事に 있어서는 技術 1級 以上을, 5億원 以下의 工事に 있어서는 技士 2級 以上을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都給金額에 不拘하고 發注者가 工事의 性質에 따라 그 工事に 適正한 技術者의 配置를 要請한 때에는 建設業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이것을 施工技術士의 活性化促求와 建設工事は 漸次로 情報化시스템施工化의 길로 걷고 있는 傾向에 對備키 위해 다음과 같이 工事金額에 따르는 技術者의 等級을 設하는 方案을 提示하여 意見を 聽取코저 합니다. 이 條項의 改正方案: 「② 建設工事의 現場에는 技術士, 技士 1級 및 技士級等 3人 以上의 建設技術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都給金額에 不拘하고 發注者가

工事의 性質에 따라 그 工事に 適正한 技術者의 配置를 要請한 때에는 建設業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로 적어 본 것입니다.

(2) 施工技術士의 工事監理權要求에 關하여 現行法上 施工技術士에게는 工事監理權을 附與하는 條項이 없으므로 이것을 打開하는 길은 技術士會가 別途로 法的研究로서 活性化의 길을 열어주도록 努力하는 수밖에 없다. 特히 留意할 것은 法的目的과 適用法이 各其 다른 2個 以上의 現行法에 兩面으로 適用받는 特惠條項이 그 性質이 다른 資格으로 兩立할 수 있는 法的事例는 찾기가 힘들 것이라 思料된다.

5.3. 科技處所管의 技術士의 活性化에 關한 問題點

(1) 資格과 業務遂行內容에 對해서는 한때 舊는 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事例, ① 制定當時의 建設業法과 ② 現在 가장 美望의 對象이 되고 있는 建築士法 등이 있다). 現在, 資格은 勞動部所管으로 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고 業務는 科技處所管의 技術用役育成法으로 分離되어 있다는 點이다.

(2)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事業과 施設物의 設計 및 大補修나 技術用役에 關한 事項에는 技術士의 資格을 가진 者만이 할 수 있다」는 新立法案條項같은 것이 必要하다.

(3) 技術士補같은 見習期間을 갖게하는 制度가 西歐나 日本처럼 必要하다.

(4) 技術士의 優待條項을 現在보다 더한 層 強力하게 條文化한다.

(5) 類似資格의 禁止를 더 強力하게 條文化한다.

(6) 技術士에게 法的受任事項을 附與한다.

(7) 技術士의 義務로 作成된 關係圖書에는 署名捺印의 表示行爲를 한다.

(8) 技術用役業體의 質과 量에 對한 需給調節을 必要時마다 하도록 한다.

(9) 用役受注에는 受注實積, 技術蓄積事項 등을 合理的으로 考慮한다.

(10) 産業設備用役과 建設技術用役輸出特化事業化와 育成策을 條文化한다.

(11) 用役業體나 技術士에게 金融支援을 講究

한다.

(12) 노우하우開發을 한 個人이나 業體를 受注上 優待하도록 한다.

6. 海外技術用役을 위한 西歐先進國의 各種標準約款

6.1. FIDIC(國際用役技術者聯合會)制定의 最新標準約款 IGRA(1979 및 1980年版)

(1) 基本 및 妥當性調查設計用役約款(Pre-investment studies): 本文 9章 58節과 特別章 9節 및 附屬書 A~D 書式이 있다.

(2) 建設工事의 設計 및 施工監理用役約款(Design and supervision of construction works): 本文 9章 64節과 特別章 9節 및 附屬書 A~C 書式으로 되어 있다.

(3) 프로젝트管理用役約款(Project management): 本文 9章 64節과 特別章 9節 및 附屬書 A~C 書式으로 되어 있다.

6.2. 플랜트輸出을 위한 標準約款

産業設備輸出에 관한 標準約款은 여러가지가 發表되고 있지만 比較的 많이 利用되고 있는 것은 FIDIC 約款, ECE 約款, I.C.E 約款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約款 等이다.

6.2.1 FIDIC 約款

海外工事は 一般的으로 充分한 技術力, 管理能力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發注者, 受注者, 技師의 3者에 의하여 工事が 進行되는 것이 典型的인 形態이다. 따라서 이 FIDIC 約款은 上記 3者의 權利, 義務를 規定한 것이다.

이 約款은 世界銀行의 勸告에 따라서 發注者, 受注者, 技師間의 責任을 均分化하여 危險均等分擔 技師의 權限, 責任範圍의 明瞭化를 期할 目的으로 1980年에 改正되었다.

● 「Conditions of CONTRACT (INTERNATIONAL)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INCLUDING ERECTION ON SITE)(WITH FORMS OF TENDER AND AGREEMENT)」

※ 1963年 5月에 初版이 나왔고, 1980年에 再版이 나와 있음 全文 53條에 準據法條項이 別途로 되어 있고, 入札書案內書式 및 契約書前文書式 等도 添加되어 있다. 1963年 初版을 번역한 韓譯版이 海外建設協會에서 1980年 12月 發刊되었다.

6.2.2 ECE 約款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즉 UN 유럽經濟委員會가 作成한 標準約款으로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輸出用産業設備 및 機械設備의 供給에 관한 一般條項(General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 for export)

이 約款은 FOB 베이스로 作成된 No.188 및 No.574의 2個의 形態가 있다. No.188은 對自由諸國, No.574는 對東歐 共產諸國에 대한 輸出을 위해 作成된 것이다.

② 輸出入用産業設備 및 機械設備의 供給, 建設에 대한 一般條項(General conditions for the supply and erection of plant and machinery for import and export)

이 約款은 Full-Turn Key 베이스로 作成한 No.188A 및 No.574A의 두 가지 形態가 있다. No.188A는 對自由諸國, No.574A는 對東歐共產諸國에 대한 輸出을 위해 作成된 것이다.

③ 海外로의 産業設備 및 機械設備의 建設에 관한 一般條項(General conditions for the erection of plant and machinery abroad)

이 約款은 Semi-Turn Key 베이스로 作成한 No.188D 및 No.574D의 2個 形態가 있다. No.188D는 對自由諸國, No.574D는 對東歐共產諸國에 대한 輸出을 위해 作成된 것이다.

④ 海外로의 産業設備 및 機械設備의 監督에 관한 追加條項(Additional clauses for supervision of erection of plant and machinery abroad)

이 約款은 産業設備 建設工事監督에 관한 追加約款으로서 No.188B 및 No.574B의 두 個의 形態가 있다.

No.188B는 對自由諸國, No.574B는 對東歐共產諸國에 대한 輸出을 위해 作成된 것이다.

6.2.3. I.C.E. 約款

ICE 契約 즉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and forms of tender agreement and bond for Use in connection with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은 英國의 土木技師協會(Institute of civil engineers: I.C.E)가 主導되어 制定한 土木工事用的 標準約款이다. 이 約款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都給者의 危險負擔問題, 즉 暴風등의 自然的 不可抗力, 戰爭 등의 人爲的 災害에 의하여 工事に 損害를 發生시키는 경우 그 損害의 責任所在를 밝히고 있다. 즉 Expected Risk 라는 概念을 導入하여 請負者가 工事中 發生한 損害를 戰爭 등에 의한 損害 및 發注者의 歸責에 의한 損害에 대한 責任은 都給者가 負擔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② I.C.E. 約款은 國際入朱建設工事의 都給約款의 母體가 되고 있다. 또한 Process plant의 標準約款으로서 英國의 化學技師協會(The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I.C.E.)가 制定한 model form of conditions of contract for process plant 가 있는데 이도 國際的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6.2.4. 其 他

그 밖에 英國의 The Institute of mechanical engineers,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및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가

추천하고 있는 標準約款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FOB, CIF, FOR 베이스의 輸出契約用

Model Form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cluding form of agreement, fourth edition, 1973. BI

② FOB, CIF, FOR 베이스의 機器調達時의 監督附輸出契約用

Model form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cluding forms of agreement and guarantee, fourth edition. 1972. B2

③ Full-Turn Key 베이스用

Model form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cluding forms of agreement and guarantee, second edition 1971. B3.

7. 맺는 말

紙面關係로 技術士活性化에 直接關聯된 國內法規의 여러가지 問題點은 詳細하게 記述치 못한 點을 罪悚하게 생각하며, 技術士로서 義務遂行上 여기에 적은 程度의 法常識은 꼭 必要하다고 느꼈기에 여기에 要約整理한 것이다. 더우기 이 海外進出時 契約締結에 參考가 될 各種標準約款의 目錄程度만 紹介한 것이다.